위험관리기법

〈전호에서 계속〉

4. 보험계약시 유의할 사항

위험관리기법의 하나로 가장 이상적인 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완벽한 보장책의 확보를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어떤 기업이건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보험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보험가입의 우선순위 결정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조건 전부 가입시키기는 어렵다. 즉 보험료의 부담이나 생산성을 고려해 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화재위험도가 높거나 재산가치가 큰 것부터 선별해서 보험가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첫째, 기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력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보험가입 우선대상으로 꼽아야 한다. 이와같은 시설에는 각종 동력설비는 물론 공장내의 기반시설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강 원 희
〈보험연수원 전임강사〉

둘째,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동산은 연소성이 높고 연기손해나 수유손(水濡損)등에 의한 피손율(被損率)이 높으므로 화재보험가입은 필수적이라 하였다.

세째, 이들 기계설비나 동산을 수용하는 건물은 구조체가 내화조일 경우 피해도가 낮으므로 우선순위는 다소 하위에 속한다고 하나 금융채권 담보의 순위가 높아서 토지와 함께 담보물이 되어 화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건물의 구조체나 벽 또는 지붕이 가연성일 경우에는 동산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보험의 목적의 화재위험도에 의한 가입우선순위 외에도 화기취급장소나 폭발물의 유무, 이 밖에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는 언제나 화재보험가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2) 부보누락의 방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보험의 계약대상물은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부보누락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목적물의 목록작성을 비치장부에만 의존하면 화재위험도에 부합된 목록작성에서 벗어난 예상밖의 누락이 생길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3) 보험계약전 검토사항

(가) 청약서의 정확한 기재

화재보험계약의 청약서 기재사항은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기재는 후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자측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의 목적의 품명

보험의 목적이 동산일 경우에 화공약품을 일반잡화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된다.

②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벽돌조인지 또는 목조인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또 지붕이 기와지붕인지 슬라브지붕인지를 명백히 기재한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도 점포인지, 사무실전용건물인지 또는 공장, 창고인지를 밝혀야 한다.

③ 건물의 평수나 규모, 동산의 수량을 알아야 적정보험가입금액을 판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시해야 되고 동산의 경우에도 개별가액을 알려면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정확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상의 최고보상한도이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가장 중요한 기재사항이다.

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책임의 존속기간이므로 오기가 없도록 한다.

⑥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자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⑦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때의 이유명시

보험금을 탈 사람과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가입자가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의 적절한 책정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화재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액(보험목적의 시가)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 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적정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가령 1억원의 재산에 5천만원만 가입했다면 전소가 되었을 때 5천만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고 잔여 5천만원은 보험가입자 스스로 메꾸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이 보험가입율이 50%인 경우에는 5천만원의 일부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5천만원의 50%인 2천5백만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잔여 2천5백만원은 보험가입자가 메꾸어야 하는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보험가액 전액을 가입하여야 한다.

반대로 보험가액이 1억원인 재산에 2억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했다해도 법정최고한도인 보험가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은 2억원이 아니고 1억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초과해서 가입한 1억원에 대해서 지불한 보험료만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알맞는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하게 책정한 전부보험(全部保險)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험가액의 변동이 심한 동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책정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시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부보험방식을 활용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량의 변동이나 가격 변동이 심한 동산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화재발생시에는 엄청난 일부보험(一部保險)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계약시에는 동산의 재고가액이 2억원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2억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했는데 그 후 예상외의 호황이 되자 추석경기를 대비해서 2억원의 상품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보험가액은 4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때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50%만 가입한 일부보험이 되어서 진정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동산의 화재보험계약은 상품이 늘어났을 때 다소 번잡하더라도 추가계약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보험기간의 중도에 동산의 보험가액이 증가하더라도 크게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약간의 초과보험으로 계약해 두는 방법도 있다.

한편 창고속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품의 가액이 고액이고 변동이 심할 경우엔 재고가액통지보험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특약은 최고보상한도액을 정해두고 보험료도 잠정보험료를 지급한 후 보험기간중 재고가액을 일정기간마다 통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재사고 발생시에는 언제나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산보험계약에 가장 합당하다고 하겠다.

(라) 다수의 물건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원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나 같은 구내에 있는 동산 등은 수용하는 건물

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을 포괄계약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도 동산의 전체가액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면책위험에 대한 대비책

화재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 또는 도난손해, 파열·폭발의 손해 등 각종 면책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둘 필요가 있다.

(가) 도난위험담보

보험의 목적에 생긴 도난손해를 보상하는것으로 도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훼손 또는 오손의 손해까지도 보상이 된다.

(나) 구내폭발담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 지진위험담보

지진으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손해와 도괴(倒壞), 파손, 매몰 등의 손해까지 보상한다.

(5) 화재위험외의 위험담보책

보통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보상받고자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가) 풍수재위험담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위험은 화재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도 자주 발생하므로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 창고 등에는 필요한 담보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나) 전기위험담보

보통화재보험에서는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축전기, 배전반 등에 전기적 사고로 그 기기 자체에 화재손해(초손해 포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나이 특약을 첨부할 경우에는 당해 전기기기에 생긴 화재손해도 보상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필요한 담보내용이다.

(다) 냉동·냉장 위험담보

같은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설비가 파괴·변조되어 온도의 변화가 생겨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특약을 첨부함으로써 이와같은 간접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냉동·냉장업자에게 필요한 담보내용이다.

(6) 보험료 절약방안

보험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저렴한 보험료로써 넓은 보장을 받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화재보험계약에도 건물의 주위가 일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연소위험이 적기 때문에 공지할인을 해주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소화설비할인이 있으며, 튼튼한 방화문이 있을 경우 방화문할인이 있는 등 각종 할인제도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최대로 보험료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폭력투쟁 사회혼란 멀어지는 민주발전